

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8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제정하였으나,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, 그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및 같은 법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
규정에 따라 편의시설 사전검사 신청을 한 자는 이 조례 폐지에도 불
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관계법령

□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- 제9조의2(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)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(「건축법」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)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9조의3(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)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□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3조의2(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)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3조의3(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)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.

이 경우 건축, 토목, 조경 및 장애인복지(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)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
가.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

나.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
다.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

수행한 사람

라.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

수행한 사람

마.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

를 수행한 사람

바. 장애인복지(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) 업무를 6년 이상 수행

한 사람

2.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

3.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대행 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소관 실 · 과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안 진 희
	담 당	강 명 천 (480-5181)